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0호 2019. 10. 21.(월)

조 례

-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35
-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8
-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52
-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4
-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57
-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63
-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 68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7
-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 80
-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8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7

공 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 109
- 목포시 금고 지정 공고 ----- 110

회람							
----	--	--	--	--	--	--	--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2호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목포시의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 · 고문 ·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시 집행기관 및 시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⑨ 의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	-------------------------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	--

해당 의원 의견	
----------	--

기타 참고사항	
---------	--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	--	--	--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18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제7항, 제27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	------	--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	--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	--	-------	--

대상

거래원인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7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7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7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3호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목포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

하여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목포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4호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목포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 연계
2. 보건·복지 등 기타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5호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6호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중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이란 아동·청소년이 정책제안, 의견수렴,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참여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 아동·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의 심의·확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① 시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과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10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해야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2. 아동·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3.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4.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6조(보조금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사업

제17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청소년 보호자 대표
7. 아동·청소년 대표

8.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한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7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목포시 시행계획에 따라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8호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6.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7.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8.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9.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목포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11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9호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목포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목포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0호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수련비용 감면) 제1항제1호 중 “등록장애인 중 1~3급” 을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련비용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련 비용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 아동,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 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u>등록장애인 중 1~3급</u> 2.~5. (생 략)	제14조(수련비용 감면) ① ----- ----- -----. 1. ----- ----- ----- ----- ----- <u>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2.~5. (현행과 같음)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1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u>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u> <u>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u>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2호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목포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건)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8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제8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목포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지사 가능)
2.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3.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4. 고용우수 인증기업, 전남도내 투자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후진학 과정 참여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에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취업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 한 기업

제9조(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기업)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 미 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2.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3. 전년도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자진 퇴직자가 3명 이상인 기업
4.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5.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7.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8.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기업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결정
2.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기업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3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부칙 <2017·4·10 조309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5조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2017·4·10 조3094>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5조 중 자동차 환적화물 에 대한 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u>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4·10 조3094> 제3조(유효기간) ----- ----- ----- <u>2022년 12월 31일</u> -----. .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4호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목포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

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사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하수과장

2. 위촉직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전문가 등 약 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5호

목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5리터, 10리터,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한해 별표8과 같이 엷은 녹색으로 M(엠)자형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0리터,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한해 별표8과 같이 엷은 녹색으로 M(엠)자형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u>5리터</u>, 10리터,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한해 별표8과 같이 엷은 녹색으로 M(엠)자형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12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전 축	대 형	15,000
	중 형	10,000
	소 형	5,000
기 타 (마 대)	40kℓ기준	2,000
의 류, 이 불	묶음단위 100 ℓ 봉투기준	2,000
장 판 (카 페 트)	1묶음 (20kℓ기준)	2,000
나 못 가 지(목재류)	묶음단위 (1m×30cm)	2,000
칸막이 판넬(합판)	개당	2,000
소화기	개당	3,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한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9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	높이(cm)	나비(cm)	두께	입구에서 담는선까지	묶는 끈폭	묶는 끈길이	손잡이끈 폭(cm)
일 반 용	5ℓ	46.5	26	0.025	13.2	6	10	—
재 사 용 봉 투	5ℓ	41.5	32 (16+8×2)	0.025	14.2	5	10	4
일 반 용	10ℓ	56.5	33	0.025	15.5	7	12	—
재 사 용 봉 투	10ℓ	53.5	36 (24+6×2)	0.025	16.5	7	12	5
일 반 용	20ℓ	69.5	42	0.030	18.4	8	15	—
재 사 용 봉 투	20ℓ	65.3	45 (31+7×2)	0.030	19.3	8	15	6
일 반 용	30ℓ	78.5	48	0.035	20.3	10	17	—
공 공 용 일 반 용	50ℓ	91.5	56	0.040	22.8	12	19	—
일 반 용	75ℓ	103.5	65	0.045	25.7	14	21	—
공 공 용 일 반 용	100ℓ	113.5	71	0.050	27.6	15	23	—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6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설립)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목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와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3조 (생 략)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설립)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목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설립) ----- ----- ----- ----- ----- -----할 수 있으며,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 도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와 상 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25조 ~ 제26조 (생 략)	제25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7호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
3.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목포시의 시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8호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5. 피해 대상 작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 물과 햇빛 관리 등 작물의 생육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m²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통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통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포획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10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신고서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내역	피해일시			
	피해지역			
	가해동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신고인 (피해자 유고시는 가족)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신고액(치료비, 입원비 등)	금	원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지역 약도 1부 2. 피해지역 사진 매 3.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고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서						
피해 농업인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 해 농경지 등	지번	지목	지적(m ²)	피해내역		비고
				작물	면적(m ²)	
				계		
피해를 입힌 동물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약도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등 사진 매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지 역			
	⑥ 피 해 면 적		⑦ 가 해 야 생 동 물	
	⑧ 피 해 내 용			
	⑨ 피해보상금 산 정 내 역			
	⑩ 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0 0 0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피해보상금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09호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공원 일시점용료 포함)
3. 공원 내 유료주차장 사용료
4. 기금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 지장물 보상 등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발전사업단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공원녹지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시장,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에 의한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 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0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13조3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7조제1호 단서 중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를 “**방법은 다음 각 호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8조의3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를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3항제3호**”를 “**영 제85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5] 사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한다.

하목 (3)과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거목 (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나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과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로 한다.

아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한다.

자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나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한다.

바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바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

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 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한다.

카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타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타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카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행	개정안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생략) 1. ~ 8. (생략)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u>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u>을 말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② ----- -----<u>자동차정류장</u>, ----- ----- -----<u>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u>-----.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내 <u>기반시설</u>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u>기반시설</u>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u>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u>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u>기반시설</u>의 설치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 -----<u>공공시설등</u>----- ----- 1. ~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시설등</u>----- ----- ② -----<u>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u>----- ----- 1. ----- -----<u>공공시설등</u>-----

제공 또는 <u>기반시설</u>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u>공공기여</u>”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생 략) 3. 공공기여 내용 중 <u>기반시설 설치비용</u>의 산정은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4. (생 략)	-----<u>공공시설등</u>----- ----- ----- ----- -----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u>-----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u>기반시설</u>”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 ----- ----- ----- ----- ----- -----<u>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u>-----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u>입목본수도</u>(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u>입목본수도</u>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분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u>입목본수도</u>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 3.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 ----- -----<u>입목축적도</u>----- ----- ----- ----- 1. -----<u>입목축적도</u>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 -----<u>입목축적도</u>----- ----- 2.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방법에</u> 따른다. 1. ~ 2. (생 략) 3. <u><신 설></u>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 -----<u>방법은</u> 다음 <u>각 호</u> 규정을 ----- 1. ~ 2. (현행과 같음) 3. <u>입목축적도 조사방법</u>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26조의3 <신 설>	제26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경관지구</u>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u>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u> ----- ----- ----- ----- ----- ----- ----- -----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 략) 1. ~ 16. (생 략) 17. <u><신 설></u>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현행과 같음) 1. ~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 ----- ----- ----- ----- -----<u>2020년 12월 31일</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 2. (생 략)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1. ~ 16.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영 제85조제3항제5호-----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u>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u>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5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u>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생략) 가.~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파. (생략) 하. (생략) (1)~(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6) (생략)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u>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업</u> <u>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u>----- ----- ----- ----- ----- ----- ----- ----- 아.~차. (현행과 같음) 카. ----- -----<u>유스호스텔</u>----- ----- ----- ----- 타.~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물환경보전법</u>」 ----- ----- ----- ----- ----- ----- (4) 「<u>물환경보전법</u>」 ----- ----- ----- ----- ----- ----- (5)~(6) (현행과 같음)

거. (생 략) (1)~(2) (생 략) (3) 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생 략) 너.~어. (생 략) 저. <신 설>	거.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물환경보전법」 ----- ----- ----- ----- (4) (현행과 같음) 너.~어. (현행과 같음)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서. (생 략) 어. <신 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 ----- 유스호스텔 ----- ----- ----- 타.~서. (현행과 같음)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서. (생 략) 어. <신 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 ----- 유스호스텔 ----- ----- ----- 타.~서. (현행과 같음)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별표 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6호 관련)**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기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한다)

다.~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자.~파. (생 략)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7호 관련)**

가.~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바.~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차.~하. (생 략)

거. <신 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6호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외한다)과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사. (현행과 같음)

아.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파. (현행과 같음)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7호 관련)**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아. (현행과 같음)

자.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차.~하.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8호 관련)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다.~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 사.~카. (생 략) 타. <신 설>	건축물(제27조제8호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마. (현행과 같음) 바. ----- ----- ----- -----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9호 관련) 가.~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 사.~타. (생 략)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9호 관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 ----- -----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타. (현행과 같음)
[별표 12]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0호 관련) 가.~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사.~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별표 12]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0호 관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차. (현행과 같음) 카. ----- ----- -----

가스 충전소 및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 타.~너. (생 략) <u>더. <신 설></u>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타.~너. (현행과 같음) <u>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별표 14] <u>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27조제12호 관련) 가.~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파.~저. (생 략) <u>처. <신 설></u>	[별표 14] <u>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27조제12호 관련)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파.~저. (현행과 같음) <u>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별표 17] <u>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 가.~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자.~리. (생 략) <u>머. <신 설></u>	[별표 17] <u>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자.~리. (현행과 같음) <u>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별표 18] <u>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파.~터. (생 략)	[별표 18] <u>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파.~터. (현행과 같음)

<u>퍼. <신 설></u>	<u>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별표 19] <u>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7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타.~서. (생 략) <u>어. <신 설></u>	[별표 19] <u>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7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타.~서. (현행과 같음) <u>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제351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1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를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업 확정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에 “매입대상선정은 위원회의”를 “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원대상 등) ① 대상지역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u>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u> 으로 한다.	제20조(지원대상 등) ① 대상지역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u>근대건축문화유산</u> 으로 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u>사업 확정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u> 이어야 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u>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u> 이어야 한다.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설)	② <u>제1항의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매입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u>	④ <u>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u>

목포시 공고 제2019-1438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준 수 사 항	관 련 법	위반 시 처분내역
○ 친절운행 이행(불친절 행위 근절) - 불친절 행위란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 시 친절 교육 실시(문서 등으로 기록관리) ※ (신고자) 불친절 행위 증거로 불친절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또는 영상을 제출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나'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하'호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0만원 ▶ 3회 : 10만원

【법규준수 강조사항】

준 수 사 항	관 련 법	위반 시 처분내역
○ 지정부착물 등 게시(민원안내 스티커) - 눈에 잘 띄는 장소에 2개(앞좌석 1개소, 뒷좌석 1개소) 부착 - 부착위치 : 앞좌석(대시보드 또는 조수석 손잡이 주변), 뒷좌석(손잡이 주변) - 디자인 : 디자인, 색상 등은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퇴색 등으로 인식 불가 시 미부착으로 간주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 같은 법 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6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 '라'목에 의한 과징금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별표4] '하'호	○ 운송사업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1차 : 5일 ▶ 2차 : 10일

목포시 공고 제2019-1441호

목포시 금고지정 공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목 포 시 장

1. 약 정 기 간

○ 2020. 01. 01. ~ 2022. 12. 31 (3년)

2. 금고 지정 금융기관

○ 광주은행 :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 농협은행 :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통합관리기금 이외 기금

3.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

○ 1위 : 광주은행 총점 835.00점

○ 2위 : 농협은행 총점 834.45점

○ 3위 : 기업은행 총점 831.40점